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4. 5 선고 2022가단1237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, 박환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승재

변 론 종 결 2023. 3. 22.

판 결 선 고 2023. 4. 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‘부동산 목록’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와 피고 사이의 2022. 7. 17.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그런데 을 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2. 8. 18.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(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2느단81), 피고와 D은 C이 상속포기신고수리 결정정보를 송달받은 2022. 8. 23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.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“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),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원목

별지